

『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4년 6월 10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6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14년 6월 19일

제1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국장 정 인 기

나. 제안이유

- 노인종합복지회관 경로식당 이용료가 2005년 개관당시 책정된 후 변동되지 않아 적정한 실비 수준으로 조정하여 급식의 질을 높이고 경로식당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고
-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 및 없어진 시설·기능 삭제 등을 규정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경로식당 이용료 조정(안 별표 1)
- 현재 없거나 수행하지 않는 시설기능 삭제(안 제3조, 제4조 및 별표 1)
 - 주간보호실, 재가봉사사업 삭제
- 장애인 차별적 표현 삭제 및 법령상 용어변경 반영(안 제7조)
 - 정신적 장애인의 이용제한 규정 삭제
 - ‘전염병’을 ‘감염병’으로 용어 변경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,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성 애

○ 본 조례안은

- 노인종합복지회관 경로식당 이용료가 2005년 개관당시 책정된 후 변동되지 않아 적절한 실비 수준으로 조정하여 급식의 질을 높이고 경로식당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 및 없어진 시설·기능 삭제 등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,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- 경로식당 이용료 조정, 주간보호실, 재가봉사사업 등 현재 없거나 수행하지 않는 시설기능 삭제, 장애인 차별적 표현 삭제 및 법령상 용어를 변경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장기간 변경되지 않은 노인종합복지회관 경로식당 이용료를 적절한 실비 수준으로 조정하여 급식의 질을 높이고 경로식당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여, 지역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,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 및 없어진 시설·기능 삭제 등을 규정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,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 론 요 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